

美國의 保險規制制度

I. 保險規制의 이유

미국의 州保險當局이 保險者를 規制하는 理由는 保險者의 支給能力 維持, 消費者의 未洽한 知識, 保險料의 合理性 保障, 保險의 可用性(availability)등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保險者의 支給能力維持

保險者의 支給能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保險規制가 필수적인데 이 목표는 保險會社의 財務狀態를 유지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支給能力은 두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첫째, 보험료는 先納으로 納入되지만 擔保期間은 미래로 擴張되어 保險會社가 破産하고 미래의 保險金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被保險者 보호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未來損失에 대한 補償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保險會社의 財務狀態를 신중하게 監督하여야 하고 保險契約者, 保險受益者, 그리고 第3의 支給請求人은 반드시 支給不能狀態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支給能力의 강화에 대한 두번째 이유는 保險會社가 破産함에 따라 保險金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막대한 경제적 불안에 노출된다

는 것이다. 예를들어 被保險者의 家屋이 태풍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도 손실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被保險者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리고 제 3의 지급청구인에게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保險會社의 支給能力을 강화하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2) 消費者의 未洽한 知識

保險規制는 소비자의 미흡한 지식때문에 필요하다. 保險證券은 복잡한 約款으로 구성된 技術的, 法的 證書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다면 비양심적인 保險者는 制限的, 法的인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무익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더구나 소비자는 각종 보험계약에 대한 金錢的 有益性을 비교,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필요한 요율 및 계약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여러 保險商品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들어 健康保險은 보험료, 담보내용, 保險給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보험료만 가지고 특정 보험계약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정

보가 없으면 소비자는 最善의 保險商品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의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상품의 質을 높이고 價格을 낮추려는 保險者의 경쟁심리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高度의 競爭市場에서 保險商品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의해 生成되는 市場效果를 만들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3) 保險料의 合理性 保障

보험료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한데 이는 보험요율이 過度하게 높지도 않아야 하고 낮지도 않아야 함을 뜻한다. 보험료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擔保費用보다 더 많이 支出해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너무 낮아 保險會社의 支給能力이 위협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保險監督官이 보험료가 너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판단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보험료 규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뒤에서 여러가지 요율에 관련된 論理와 料率規制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 保險의 可用性

최근의 규제목적은 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험이 이용가능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保險者는 종종 保險引受(underwriting) 損失, 不適正 料率體系, 逆選擇(adverse selection), 기타 追加要因 때문에 모든 請約者에게 적합한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公益次元에서 保險監督官은 民營保險市場을 保險加入이 보다 용이한 방향으로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만약 民營保險會社가 필요한 보험을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의지가 없다면 公營保險이 이를 대신해야 할 것이다.

II. 保險規制의 역사적 발달

여기서는 州政府에 의한 保險規制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保險規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分岐點이 되었던 法的 判決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初期 規制 努力

保險規制는 州議會가 新設 保險業者에게 免許를 내주면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新設保險會社의 설립과 영업에 대해 감독했으나 初期 新設保險會社는 거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며 재정상태에 관련된 定期的 報告書를 제출하고 公共情報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었다. 1837년 매사추세츠州에서 保險者에게 재정적 安全을 위해 準備金을 保有하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통과되어 州規制는 한층 公式化되었다. 保險規制의 다음 단계는 州保險監督機構의 設置인데 1841년 뉴햄프셔州가 최초로 독립보험기구를 설치했으며 다른 州도 이것을 따랐다. 1859년 뉴욕州는 광범위한 許可權과 調查權이 부여된 一人 監督官에 의해 운영되는 獨立規制事務所(separate administrative agency)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初期保險規制는 州政府의 감독과 司法措置에 의해 발달했다.

(2) Paul v. Virginia事件

1869년 Paul v. Virginia사건은 保險規制에 대한 州의 權限을 定立시키는 중요한 法的判決이었다. Samuel Paul은 多數의 뉴욕州 保險者와 代理店 契約을 맺은 버지니아州의 代理店主였는데 免許없이 버지니아州에서 화재보험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5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버지니아州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보험이 州間의 產業이기 때문에 聯邦政府만이 미국의 商法에 근거해 保險規制權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이 州間의 產業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상법조항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Paul v.

Virginia의 법적 중요성은 聯邦政府보다는 州政府의 保險規制權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법적 판결은 1944년 대법원에 의해 번복될 때까지 75년 동안 有效하였다.

(3) SEUA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 事件

보험이 州間的 產業이 아니라는 Paul v. Virginia의 판결은 1944년 대법원에서 번복되었다. SEUA는 保險料率算出機關으로서 固定料率의 算出과 기타 서면獨占禁止法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SEUA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州에서 商行爲를 했을 때 보험은 州間的 產業이고 聯邦規制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와 같은 판결은 個別料率算出團體의 適法性和 州政府의 保險規制力 및 조세 부과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保險業界와 州監督官에 대하여 대단한 혼란을 야기시켰다.

(4) McCarran-Ferguson法

SEUA사건이후 야기된 혼란과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美議會는 1945년 McCarran-Ferguson법 (공법 제 15호)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州政府의 보험업에 대한 규제와 조세부과가 公益에 符合되며 州政府에 의한 규제가 불가능한 범위에서만 聯邦獨占禁止法이 적용된다. 즉 州政府에 의한 규제가 효과가 있는 한 聯邦獨占禁止法の 적용은 없게 된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으로부터 모든 事項에 대해서 絶對적으로 免制받는 것이 아니고 서면法 (Sherman Act)에 의해 보이콧, 강요, 협박을 위한 어떠한 행동이나 協定도 금지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우는 保險者가 聯邦法の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州政府가 여전히 保險規制에 대한 一次的인 責任을 지고 있지만 美議會는 保險產業에 대한 규제권을 聯邦政府에 移讓하기 위해 McCarran

-Ferguson法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 아직 定期國會에서의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90년 6월 下院의 法司委員會는 保險業界가 지난 45년 동안 적용받아온 聯邦獨占禁止法으로부터 免除를 撤回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II. 規制方法

保險規制는 立法, 司法, 州保險廳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立法(legislation)에 의한 규제

모든 州에는 保險會社의 활동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이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 保險會社의 설립
- 대리점과 브로커의 免許
- 支給能力을 유지하기 위한 財務的 要件
- 保險料率
- 販賣 및 保險金 지급
- 租稅
- 保險者의 復活 및 清算

또한 保險者의 解止權限을 제한하는 법이나 보험의 可能性을 擴大하는 法과 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州法에 추가해서 保險會社는 聯邦次元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州에서 우편에 의해 영업을 하는 保險會社(mail-order insurer)를 규제할 수 있다.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變額年金에 관련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一般大

衆에게 保險會社 證券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74년의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은 保險者의 企業年金保險에 적용된다.

(2) 司法에 의한 규제

保險會社は 사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州 및 聯邦法院은 정기적으로 州保險法の 合憲性 與否, 保險約款에 대한 解釋, 州當局에 의한 行政措置의 적법성 등을 판결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司法的 判決이 保險者의 市場行動과 營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州保險廳에 의한 規制

保險會社は 州保險廳에 의해서도 規制를 받는다. 모든 州와 콜롬비아 特別區에는 別個의 保險廳이 있으며 대부분의 州에서 保險監督官(州知事가 임명하는 것이 관례)은 州保險法을 運轉할 책임을 갖는다. 行政規則을 통해서 州保險監督官은 그 州에서 事業을 營위하는 保險會社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公證회를 개최하고, 停止命令(cease-and-desist order)을 내리거나, 保險者의 營業 許可를 취소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州監督官은 全美保險監督官會義(NAIC)에 소속되는데 1871년에 설립된 NAIC는 정기적으로 입법이나 규제를 필요로 하는 업계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 NAIC는 여러 분야에서 모델법안(model law)을 만들었으며 州義會가 NAIC의 提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록 NAIC가 권고안의 채택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州는 권고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고 있다.

IV. 規制對象

保險者는 여러가지 법과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주요 대상은 保險會社의 設立과 免許, 財務上의 規制, 요금규제, 보험증권 양식, 보험판매 및 소비자 보호등이다.

(1) 保險會社의 設立과 免許

모든 州는 保險會社의 設立과 면허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新設 保險會社는 법에 의해 設立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保險會社는 州政府로부터 設立과 합법적 존재를 증명하는 허가서(charter or certificate)를 받는다. 회사설립 이후 保險會社는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營業을 할 수 있는데 면허요건은 다른 業種의 회사에 비해 매우 엄격해 고도의 정직성, 經營능력, 재정능력이 요구된다. 만약 주식회사 형태이면 保險者는 州別, 보험종목별로 다양한 최소자본 및 營業기금 요건을 充足시켜야 한다. 신설 상호 보험회사는 최소영업기금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다른 요건도 마찬가지로 이다. 면허는 州內(domestic), 州外(foreign), 外國(alien) 保險者로 구분하여 발급될 수 있다. 州內保險者는 州에 등록되어 있는 保險者를 말하며 다른 州에서 營業을 하려면 그 州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州外保險者는 다른 州에서 면허를 취득한 保險者로서 特定州에서 營業을 하려면 그 州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 보험자는 외국에서 인가받은 保險者로서 特定州에서 營業을 하려면 그 州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州外, 外國保險者에 대한 면허요건이 州內 保險者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2) 財務上의 規制

최소자본 및 營業기금요건 이외에도 保險會社는 다른 財務上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財務上의 규제는 保險者의 支給能力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a. 許容資産(admitted asset): 保險者は 부채를 相計하는데 충분한 資産을 確保하고 있어야 하는데 단지 허용된 資産만 大차대조표에 나타낼 수 있다. 허용자산은 財務狀態를 결정함에 있어 保險者가 大차대조표에 나타낼 수 있도록 州當局이 허용한 것을 의미하며 그의 모든 것을 비허용자산이 라 한다. 大부분의 資産은 허용자산으로 分類되며 현금, 채권, 株式(보통주 및 우선주), 담보대출(mortgage), 부동산, 기타 합법적 투자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資産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은 額面價値로 평가되고 채권의 가치 是 市場에서 결정되며 (상환가치가 아님) 보통주는 NAIC의 株式평가(일반적으로 12월 31일의 市場價値)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담보대출은 미해결 부채의 규모에 기초해 평가되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시장가치가 장부가 격에 의해 평가된다.

b. 準備金(reserves): 準備金은 大차대조표상의 부채항목으로서 장래에 이행해야 할 의무를 반영한다. 주당국은 準備金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c. 剩餘金(surplus): 保險會社의 잉여금은 주의 監계 관찰되고 있으며 契約者剩餘金(policyholders' surplus)은 保險會社의 資産과 부채의 차이를 의미한다. 株式회사 의 잉여금은 아래의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株式자본계정(capital stock account)은 주주에게 발행한 株式의 가치이고, 납입 잉여금(paid-in surplus)은 株式의 가치 以上으로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다. 위의 두 항목은 모두 契約者剩餘金을 나타낸다. 상회회사에는 주주가 없기 때문에 契約者剩餘金은 단순히 資産과 부채의 차이가 된다.

損害保險에서 契約者剩餘金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保險會社가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종목의 營業규모가 契約者剩餘金에 의해 제한된다. Kenny 규칙에 의하면 大체로 契約者剩餘金 1달러에 대해 신규 순보험료 2달러를 인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보험인수 손해나 투자 손해를 상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로 契約者剩餘金은 기간이 오래 경과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준비금의 부족을 補填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生命保險에서는 보험료와 배당금의 계산에 건실한 마진(safety margin)적용, 법정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신중한 이자율 적용, 투자에 대한 신중한 평가, 營業의 보다 높은 안전성, 거대 손실의 낮은 발생 가능성등 때문에 契約者剩餘金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d. 投資: 保險會社의 투자는 投資類型 및 質, 다른 資産에 투자될 수 있는 잉여금이나 資産의 비율등 의 측면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保險會社의 支給能力을 위협하고 保險契約者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건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다.

①生命保險會社: 保險會社의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生命保險會社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법에 의해서 정하고 일반적으로 資産 또는 잉여금의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투자 대상에서 최대 규모를 정한다. 生命保險會社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우선주, 채권, 담보대출, 保險契約者貸出(policy loan)에 투자한다. 모든 州는 일반투자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뉴욕州에서는 보통주에 대한 투자가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총자산의 1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특정 투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生命保險會社로 하여금

투자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투자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損害保險：損害保險會社は 투자에 있어 生命保險會社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데 실제 규제는 州別로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만 다루기로 한다. 첫째, 최소자본요건과 관련하여 基金은 聯邦, 州, 또는 市發行 채권이나 담보 또는 신탁행위에 의해 보장받는 채권에 투자되어야 한다. 둘째, 미경과보험료 및 준비금에 관련되어 이러한 부채를 相計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최소자본요건을 만족시키는 자산에 투자될 수 있다. 최소자본요건과 책임준비를 초과하는 기금은 支給能力이 있는 保險會社의 보통주에 투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사옥이나 영업에 필요한 기타 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 事業費의 制限：生命保險에 있어서 몇몇 州에서는 신계약을 모집하고 기존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사업비에 관한 법률은 극히 복잡하며 일반적으로 신계약 모집 비용, 수수료, 보너스 서비스요금, 기타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뉴욕州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保險會社는 다른 州에서 인수한 계약에 대해서도 비용한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뉴욕州法이 가장 광범위하게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비용을 제한하는 법의 목적은 生命保險會社가 대리점에 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의 保險商品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있다.

f. 配當政策：生命保險에서 영업이익이 保險契約者에게 配當金 형식으로 분배될 수 있으며 또는 현재, 미래의 필요를 위해 保險會社의 잉여금으로 적립될 수도 있다. 많은 州에서는 生命保險會社가 적

립할 수 있는 잉여금의 규모를 계약준비금(policy reserves)의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保險會社가 契約者 配當金의 회생을 통해 막대한 잉여금을 적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g. 報告書 提出 및 檢査：연차 보고서 및 검사도 또한 保險者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모든 保險會社는 연차보고서 (convention blank로 알려져 있음)를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州의 保險廳에 제출해야 한다. 연차보고서에 의해 자산, 부채, 준비금, 투자, 支給保險金 및 기타 정보등 상세한 금융정보가 규제당국에 제공된다. 保險會社는 또한 정기적으로 州當局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州內 保險者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에 한번씩 州當局에 의해 검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며 州外 保險者나 外國 保險者도 정기적으로 檢査를 받게 된다. 검사의 중복과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全國을 6個의 檢査區域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구역에는 몇개의 州가 속하게 된다. 保險會社는 자기가 속한 州保險當局의 일반적 감독하에 다른 몇개 州 保險當局으로 구성된 檢査팀에 의해 檢査를 받게 되며 檢査結果報告書는 당해 保險會社가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州에 배포된다.

h. 保險會社의 清算：保險會社가 技術的으로 支給不能일 때 州保險當局은 保險會社를 통제, 관리하게 되는데 適正經營에 의해 保險會社가 성공적으로 原狀回復될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適正經營이 불가능할 경우 州保險法에 따라서 保險會社는 청산될 것이다. 많은 州에서 標準 保險會社 清算法 (Uniform Insurers Liquidation Act)이 채택되었는데 이 법안은 파산한 保險者의 자산과 保險金의 청산에 있어서 州間의 同一性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

었다. 이 법안에 의해 支給不能 保險會社가 사업을 영위한 모든 州의 모든 契約者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다.

만약 保險會社가 지급불능사태에 봉착하면 保險金이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州가 保險保證基金을 설치했다. 대부분의 州에서 支給保證基金은 오직 損害保險만을 담보하며 生命保險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9년과 1983년 사이에 84개의 損害保險會社가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했다. 基金의 賦課方法(assessment method)은 未支給保險金を 지급하기 위한 需要자금을 充당하는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州에서 保險會社는 그 州에서 인수한 純保險料의 2%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保險會社가 기금을 割當받게 되는데 뉴욕州는 예외적으로 지급기금 事前割當制(이것에 의해 회사는 지급불능사태 이전에 할당을 받는다)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뉴욕州를 제외한 州保證基金은 支給不能 保險者에게 4억 5,3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3) 料率規制

일리노이州를 제외한 모든 州에는 料율이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料율규제법이 있는데 料율은 적정하고, 합리적 (과도하지 않고)이며 公平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州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料율규제는 통일된 방법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料율규제 방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 州制定料率 (state made rates)
- 料率算出機關 制定料率 (mandatory bureau rates)
- 事前認可 料率 (prior approval laws)

• 申告後 使用 料率 (file-and-use laws)

• 申告 不要 料率 (no-filing law)

a. 州制定 料率 : 州制定料率は 가장 엄격한 형태의 料율규제이며 州機關이 料율을 산출하고 모든 보험업자들은 이 料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텍사스州가 이런 체제를 갖고 있으나 텍사스州法에서도 일부 料율의 修正은 허용되어 약간의 가격 경쟁이 유발된다. 매사추세츠州도 自動車保險에 대해 州制定料率을 적용하고 있다.

b. 料率算出機關 制定料率 : 이 制度는 거의 州制定 料率 만큼 엄격한데 料율산출기관이 料율을 산출하고 법에 의해 모든 保險者들은 이 料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料율수정이 허용된다. 料율산출기관 制定料율은 노스캐롤라이나州에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적용된다.

c. 事前認可 料率 : 대다수의 州는 料율을 규제하기 위한 몇가지 유형의 사전인가 料율을 갖고 있다. 事前認可 料率制度下에서 料율은 사용하기 전에 州保險廳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保險會社는 몇가지 이유로 事前認可 料率制度를 비판해 왔는데 종종 州保險廳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料율 인상을 위해서 州保險廳이 요구하는 통계자료가 쉽게 입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

d. 申告後 使用 料率 : 이런 유형의 料率制度는 앞에서 살펴본 料率制度 보다는 자유롭다. 申告後 使用 料率制度下에서 保險會社들은 단지 州保險廳에 料율을 신고한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料율이 州法에 위반될 때 추후 감독당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게 된다. 이 유형의 料率制度는 事前認可 料率制度下에서 나타나는 인가의 지연 문제를 해결해 준다.

e. 申告 不要 料率 : 신고 불요 料율 또는 자유경

쟁요율이란 가장 자유로운 것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먼저 제정했다. 이 料率制度下에서 保險者들은 州 保險當局에 料率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州監督官에게 要율계획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申告 不要 料率制度의 배후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自由競爭이 料率의 合理性과 保險의 可用性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f. 生命保險料率 規制 : 料率規制에 관한 지금까지의 내용은 주로 損害保險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生命保險 料率은 州가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生命保險料率의 適正性은 法定最小責任準備金에 대한 규제에 의해 간접적으로 달성된다. 法定最小責任準備金 要件은 死亡保險金과 비용의 지급에 관련된 要율에 영향을 미친다.

(4) 보험증권양식

보험증권양식의 규제는 保險規制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다. 왜냐하면 保險契約은 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州保險監督官은 保險商品이 대중에게 판매되기 전에 보험증권 양식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사기나 속임수, 불공정 조항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 판매와 소비자 보호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保險者들의 판매행위도 규제되어야 하는데 대리점과 브로커에 관한 법, 할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에 의해 규제된다.

a. 대리점과 브로커의 면허 : 모든 州는 대리점과 브로커가 면허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州에서 신청자는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특별한 연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험은 보통 州保險廳의 주관하에 실시된다. 시험의 목적은 신청자가 保險法과 契約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브로커가 무능하거나 부정직하다면 州保險監督官은 브로커의 행위에 관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b. 트위스팅 : 모든 州는 트위스팅(twisting)을 금하고 있다. 트위스팅이란 오해나 불완전한 정보때문에 保險契約者가 현재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保險契約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트위스팅에 대한 규제는 주로 生命保險에 적용되는데 그 목적은 保險契約者가 生命保險證券을 다른 것으로 바꾸므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州에는 기존 保險契約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保險契約者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다. 이러한 법은 保險契約의 변경이 일반적으로 保險契約의 최대 이익이 아니라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의 보험증권 판매 시 수수료와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고 새로운 명백한 조항과 자살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保險契約者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높은 保險料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保險契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가정은 많은 연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된 保險契約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生命保險契約의 변경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 William Scheel과 Jack Van Derhei는 연구대상 州 대다수의 변경은 수용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즉, 保險契約者에게 비용이 절약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그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契約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州保險監督官의 견해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c. 리베이트 : 대부분의 保險法은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는 保險料의 일부를 할인하

거나 保險證券을 구입하게 하려는 유인으로서 특정 개인에게 다른 금전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예는 被保險者에게 대리점 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리베이트 금지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被保險者가 다른 契約者에 비해 불공평하게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保險契約者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이다.

d. 불공정 거래 행위(unfair trade practices) : 保險法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널리 확산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트위스팅, 리베이트, 사기나 허위 광고, 불공평한 보험금 청구 해결, 불공정한 차별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州保險監督官은 保險會社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때에는 保險會社가 처벌 및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保險者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e. 민원 담당 부서 : 州保險廳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다. 그 부서나 개인은 불만을 조사하여 保險者나 대리점으로 부터 불만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 불만은 保險金請求와 관련된 것인데 保險會社는 保險金支給을 거절하거나 지급액에 대해 논쟁할지도 모른다. 비록 州保險廳이 개인적 불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保險金請求에 대해 保險者로 하여금 그 댓가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약하다. 불만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General Accounting Office(이하 GAO)는 대부분의 소비자 불만은 타당해 보이며 그것의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保險에 가입하고 있는 保險契約者는 保險會社나 代理人

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면 州保險廳에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발송해야 한다.

f.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保險證券 : 보험증권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는 추세는 消費者를 한층 더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다. 保險契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용어가 덜 기교적이고 이해하기 용이한 保險證券을 州當局은 인가해 왔다. 이해가 용이한 保險證券의 개발은 틀림없이 대부분의 消費者에게 이익될 것이다.

g. 고객 안내서 : 뉴욕州, 펜실바니아州, 위스콘신州를 포함한 몇몇 州에서 消費者를 위하여 고객 안내서가 배포되고 있다. 이 안내서는 保險契約의 類型, 보험저축, 保險會社와 代理店의 선택방법, 保險金請求, 분쟁 해결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에는 종종 유사한 保險證券에 대해 여러 회사의 保險料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여 消費者로 하여금 保險商品의 原價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自動車保險, 住宅所有者保險, 生命保險에 관한 원가 정보는 消費者가 저렴한 保險商品을 제공하는 保險會社의 保險證券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V. 保險租稅制度

保險會社는 각종 地方稅, 州稅, 聯邦稅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두가지 중요한 것은 聯邦所得稅와 州保險消費稅이다. 保險會社는 聯邦法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의해 정해진 복잡한 공식과 규칙에 근거해 聯邦所得稅를 납부한다.

또한 모든 州는 收入保險料 總額에 대해 保險料稅를 징수하는데 稅率은 1.4%에서 4%의 범위이며 대부분의 州에서는 2%를 부과한다.

保險料稅의 주요 목적은 保險規制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州의 收入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대부분의 州保險廳의 예산은 保險料稅收入의 5%미만이다. 그러나 州規制가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保險規制에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부분의 州에는 保險料稅 및 기타 租稅에 영향을 미치는 보복조세법(retaliatory tax law)이 있다.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州의 保險料稅가 2%이고, 아이오하州에서는 3%라고 가정하자. 만약 네브라스카州의 保險者가 아이오하州에서 인수한 保險契約에 대해 3%의 保險料稅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네브라스카州에서도 영업을 하는 아이오하州內 保險者는 네브라스카州 保險料稅가 2%임에도 불구하고 3%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보복조세법의 목적은 어떤 州의 州內 保險者가 다른 州에서 영업을 할 때 租稅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보복조세법은 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VI. 州規制와 聯邦規制

현재 McCarran法이 폐지되고 聯邦規制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保險業界와 州監督官은 추가적인 聯邦規制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우선 聯邦規制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聯邦規制의 장점

聯邦規制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a. 法律의 單一性: 聯邦規制에 의해서 法律의 單一化를 기할 수 있다. 州規制下에서는 2개州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保險會社는 다른 州의 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聯邦規制下에서는 法이 單一化 될 것

이다.

b. 效率性 增加: 聯邦規制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는 保險會社는 수많은 保險廳 대신 聯邦保險當局과 접촉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聯邦保險當局(federal agency)은 업계에 압력을 덜 가할 것인데 특히 이것은 地方 保險會社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聯邦規制에 행정비용이 보다 적게 소요될 것이다.

c. 보다 유능한 監督官: 聯邦規制는 保險會社의 규제업무를 더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더 높은 보수와 명예가 유능한 인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2) 州規制의 장점

州規制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州規制의 장점을 주장한다.

a. 地域的 要求에 대한 민감성: 地域的 要求는 매우 다양하며 州監督官은 그것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반면 聯邦規制下에서는 관료적 형식주의에 의해 지방차원의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지연이 초래될 것이다.

b. NAIC에 의한 法의 單一化가 NAIC의 모델법안과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현재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州法의 合理的인 單一化가 형성되고 있다.

c. 改革 機會의 增加: 州規制는 改革의 機會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個別 州는 새로운 改革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실패하더라도 오직 그 州만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에 聯邦規制의 실패는 모든 州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聯邦規制로 인한 결과의 불확실성: 州規制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하여 消費者와 保險產業에 대한 聯邦規制의 영향은 전혀 미지의 상태이다.

e. 政治力의 分權化: 州規制는 政治力의 分權化를 초래하는데 聯邦規制에 의해 경제에 대한 聯邦政府의 추가적 간섭과 그에 따른 州權限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州規制의 단점

州保險廳에 의한 保險規制의 效率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GAO는 州規制를 지지하는 증거와 반박하는 증거를 밝혔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GAO는 많은 단점을 지적했는데 다음과 같다.

a. 불충분한 消費者 保護: 대부분의 州保險廳은 消費者保護의 관점에서 保險金, 保險料率算出, 부당한 차별등으로부터 消費者가 적절하게 대우를 받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체계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b. 財務 規制上の 결함: 대부분의 州는 財務에 관한 規制에 있어서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의에는 NAIC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몇 州에서는 조사관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州도 극히 드물다.

c. 민원처리의 미흡: 많은 州가 각각의 保險會社에 대한 불만을(보험료에 대한 불만을)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그 비율을 공표하거나 消費者가 사용하도록 하는 州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州는 불평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조사과정에 포함시키는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d. 保險社의 시장행태 조사에 관한 기준의 결여: 시장행태조사는 保險金 査定, 保險引受, 광고 및 기타 거래 행위와 같은 소비자 문제에 대한 保險當局의 조사를 말하는데 많은 시장행태검사 보고서에

는 심각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保險者의 시장행태를 평가함에 있어 명시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e. 保險可用性: 소수의 州만이 損害保險의 可用性이 심각한 문제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f. 保險業界와의 밀착관계: 州保險廳은 消費者의 회생을 무릅쓰고 保險會社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保險規制가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친근한 관계로 특징지어져서는 안된다. 州保險監督官의 半은 이전에 保險業界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감독관직은 떠난 후에 다시 반 정도가 업계로 복귀하고 있다. 게다가 NAIC와 자문위원회가 수적으로 업계 대표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GAO는 또한 州規制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規制에 있어서의 상당한 정도로 單一化가 NAI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른 州의 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聯邦規制의 위협이 州監督官으로 하여금 더욱 일처리를 잘하도록 만드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마지막으로 州保險廳이 지방차원의 독특한 保險 要求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醫療過失事故(medical malpractice)와 企業賠償責任保險(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증거가 있다.

(4) McCarran法의 폐기

州規制의 단점때문에 의회에 McCarran法을 폐지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獨占禁止法 개정을 위한 전국 위원회는 McCarran法에 의해 保險會社에 주어진 광범위한 獨占禁止法에 대한 면제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상원독점금지소위원회

도 또한 保險業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제안했는데 세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McCarran法 하에서 주어졌던 保險會社의 聯邦獨占禁止法으로부터의 면제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料率算出機關 料率이나 協定料率의 제한을 통해 價格競爭이 권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保險料率의 무차별성, 주요 損害保險擔保의 완전 이용 가능성, 被保險者別 불공정하고 과도한 保險料 차이의 제거 등을 보장하기 위해 聯邦 最低基準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聯邦規制가 保險規制의 효과를 실제로 향상시킬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다른 산업에 대한 聯邦規制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예를들면 철도, 항공, 운송과 같은 産業에 대한 聯邦規制는 타기업의 進入을 어렵게 하고 巨大企業의 市場支配力을 保護하게 되어 그 결과 規制者와 被規制者의 關係가 친숙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競爭에 해가 되었다.

VII. 保險規制에 대한 현재의 爭点

保險規制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사안들, 즉 生命保險原價의 公示制度(life insurance cost disclosure), 自動車保險料率 等級制度(automobile insurance rate classification system), 銀行의 保險業界 進出등이 현재 論議의 爭点이 되고 있다.

(1) 生命保險原價의 公示制度

生命保險原價의 公示制度는 중요한 規制條項이다. 消費者團體는 生命保險商品에 대한 진정한 原價情報가 消費者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原價關聯資料의 형태와 제공방식이 계속해서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다.

a. NAIC의 原價公示에 대한 勸告案

NAIC의 原價公示 勸告案에 의하면 利子調整方法(interest-adjusted method)에 기초한 原價關聯資料가 生保契約者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還給金付 生命保險(cash-value policy) 契約者에게 純支給原價指數(net-payment cost index)와 解約原價指數(surrender-cost index)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生保業界가 NAIC의 提案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消費者 團體에 의하면 追加情報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저명한 生命保險 批判者인 Joseph Belth 교수는 NAIC의 提案에 대한 몇가지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 NAIC提案에 따르면 保險商品의 판매 후 정기적인 公示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保險契約者에 대한 착취의 기회가 존재하게 된다.

(b) 25년 후의 原價情報가 제공되어 保險商品이 價格面에서 불리할 때 유리한 保險商品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는 특정 계리조정의 형태를 밝혀야 하는데 價格情報가 제공되지 못한다.

(c) 還給金付 生命保險 對한 收益率 情報가 나타나 있지 않아 還給金付 生命保險商品의 저축부분의 收益率에 대해 消費者는 무지한 상태가 된다.

(d) 保險料가 월별, 분기별, 또는 연2회 될 때 原價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保險契約者에게 公示되지 않는다.

b. 聯邦去來委員會 報告書(Federal Trade Commission Report)

FTC의 報告書에 의하면 生保業界는 모든 還給金付 生命保險契約과 年金契約에 대한 年平均收益率을 告示하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原價情報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되었다. FTC는 生保商品의 購入과 契約所有에 관련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

래와 같다.

(a) 낮은 收益率: 還給金付 生命保險商品의 저축 부분에 대한 收益率이 낮을 때가 종종 있다. Linton 방식에 의하면 1977년에 판매된 還給金付 生命保險商品의 5년동안의 收益率은 -9%에서 -19% 사이이며, 10년 동안의 收益率은 1%이고 20년 동안의 收益率은 2%에서 4.5%이다. 다른 방법에 의해 算出해도 1977년의 一般 生命保險商品에 대한 生保産業 전체의 平均 收益率은 거의 1.3%이다.

(b) 초기 解約으로 인한 損失: 終身 生命保險契約이 초기 몇년동안에 解約될 경우 契約者들은 막대한 損失을 입는다. 새로이 체결된 契約의 약 20% 정도가 첫 2년동안에 실효되고 있다. 모집에 대한 가중한 수수료, 판매비용, 대부분의 상품이 첫해에는 解約환급금이 없다는 사실때문에 初期解約은 保險契約者의 막대한 損害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난다.

(c) 類似한 保險의 原價側面에서의 큰 차이: 유사한 終身 生命保險 原價가 保險會社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FTC에 의하면 \$25,000의 終身 生命保險에 있어서 原價가 낮은 保險證券을 구입함으로써 20년동안 \$4,700을 節約할 수 있다.

C. FTC報告書에 대한 美國保險業界의 反應

生保業界는 FTC報告書가 誤謬가 많고 오도되었으며 定期保險에 유리하도록 왜곡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保險關聯 각종 協會들은 FTC의 還給金付 生命保險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에 대해 FTC를 공격했으며 FTC의 基金을 減縮하라고 議會에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生保業界 대변인은 1977년 모든 一般 生命保險의 收益率의 1.3%라는 것은 전혀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수치는 의문이 가는 방법과 가정(예를

들어 新保險證券과 舊保險證券을 같이 사용했다거나 定期保險이 계산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收益率을 낮추는 것등)에 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業界는 또한 還給金付 生命保險이 平均 收益率을 保障해야 한다는 FTC의 권고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收益率의 計算과 公表는 단지 保險契約者를 혼란시킬 뿐이고 또한 情報의 준비에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그 費用은 결국 消費者에게 轉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收益率의 公表는 終身生命保險을 저축부분과 遞減性 定期保險으로 分離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分離는 終身生命保險이 분리가능한 契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d. 消費者 團體로부터의 反應

每年 收益率 資料를 公示하는 것을 반대하는 生保業界의 論理는 많은 消費者 團體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Joseph Belth 교수는 生保事業者들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 公示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많은 保險會社가 類似한 保險에 대해 다른 保險會社에 비해 실제로 높은 保險料를 策定하고 있다. 둘째, 사기적인 販賣行爲가 生保市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째, 몇몇 保險會社는 生命保險契約을 판매함에 있어 실제 價格보다 낮게 보이는 것처럼 弄奸을 부리고 있다. 네째, 많은 保險會社가 기존의 長期 保險契約者보다 새로운 保險을 加入하는 契約者가 유리하도록 하는 價格制度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生命保險原價의 告示制度에 관한 本質에 대해서 열띤 論爭이 계속되고 있다. Joseph Belth가 관여하고 있는 消費者 團體는 年間 收益率 資料의 公示를 계속 주장할 것이고 生保業界(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는 Amer-

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에 의해서 대표된다)는 그러한 公示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장래에 州保險監督官은 年間 收益率 資料가 保險契約者에게 가치있는 것이라고 느낄 것이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 Joseph Belth와 그의 지지자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으로 보인다.

(2) 自動車保險 料率 等級制度

일정한 料率算出要因에 기초하여 分類하는 운전자 等級制度가 保險規制의 또다른 論爭거리이며 특히 自動車保險에서 料率算出要因으로 연령, 성별, 결혼여부를 사용하는 것이 論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分類要因에 의하면 젊은 운전자, 남성 운전자, 미혼 운전자는 각각 나이가 많은 운전자, 여성 운전자, 기혼 운전자보다 높은 保險料를 내야 한다. 여러 州에서는 自動車 保險의 分類要因으로 연령과 성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分類要因으로 연령과 성별의 사용을 고집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의해 平均 損害額 보다 높은 損害額을 나타내는 계층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층은 保護에 대해 보다 높은 保險料를 支給해야 한다. 연령을 살펴보면 1983년에 25세 이하의 운전자는 美國 전체 운전자의 21%를 차지한 반면 사고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연령층에서 남성 운전자는 여성운전자에 비해 높은 事故率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젊은 남성 운전자 계층에 보다 높은 保險料가 부과되는 것이 공정하다.

둘째, 업계는 계층별로 豫定損害率에 근거해서 保險料를 算出하는 것이 공정하고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特定料率算出 要素(연령, 성별 등)를 제거함으로써 損害額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保險料分擔의 결과를 招來할 것

이다. (즉, 위험이 낮은 계층은 現行制度에서 보다 높은 保險料의 支給이 강요되어 위험이 높은 계층의 保險料를 분담할 것이다) 위험계층은 저위험계층의 희생으로 불공정하게 보조를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젊은 미혼 남성 계층의 운전자는 실질적인 保險料 減少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반면 기타 계층에 대한 保險料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批評家들은 연령과 성별이 自動車保險의 等級分類要因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의 개념을 들고 있다. 첫째, 等級分類要因으로 연령과 성별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들이 개인의 統制範圍을 넘어선 요소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차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운전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경력과 개별운전기록과 같은 것들을 自動車 保險料의 算出要素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운전기록이 좋은 젊은 계층의 운전자가 부당하게 위험이 높은 운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도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초과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 된다. 等級制度가 세밀하지 못하고 여러 계층이 완벽한 동질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계층에는 그 계층의 평균보다 실제로는 운전기록이 좋은 운전자도 나쁜 운전자로 취급되어진다. 제일 큰 불공평은 고위험계층에 속하는 좋은 기록을 가진 젊은 운전자에게 발생하며 최대의 초과부담은 제일 높은 保險料 支給 階層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그 계층의 동질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달러 단위의 保險料가 통상적인 몇몇 지역에선 운전기록이 좋은 젊은 운전자중 잘못 분류된 자들은 수백달러 또는

수천 달러의 초과부담을 저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젊은 운전자의 일정 수는 잘못 분류되고 초과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料率制度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운전자가 매년 수백 달러의 초과부담을 지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많은 운전자가 매년 10달러 내지 20달러의 초과부담을 지는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州에서 이와같은 反論이 設得力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自動車保險에서의 料率算出要素로서 연령과 성별의 사용은 계속해서 許可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料率算出要素로 성별을 사용하는 것은 自動車保險에만 制限된 것은 아니다. 현재 많은 團體가 保險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근거한 保險料의 차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料率算出要素로 'unisex'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권장되고 있다.

(3) 銀行의 保險業界 進出

많은 論爭을 불러 일으킨 制度의 爭點은 市中銀行이 保險產業에 진입하는 정도이다. 銀行業의 자유화, 새로운 컴퓨터 기술, 그리고 銀行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서 市中銀行과 여타 금융기관의 차이는 급격히 벌어졌다. 최근 市中銀行은 保險商品의 판매와 契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表明하고 있다.

市中銀行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적인 論理에 의해서 保險業界 進出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消費者의 편이 : 消費者는 保險商品의 구입장소 및 방법에 대한 선택권과 地方銀行에서 保險商品을 구입하는 편이를 가져야 한다.

b. 여타 산업의 保險業 進出 : 석유회사, 백화점, 철도회사, 제과식품회사, 피아노회사 등이 保險產業에 진입했기 때문에 市中銀行도 保險產業에 進入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c. 保險會社의 銀行 引受 가능성 : 保險會社가 銀行을 引受할 수 있는 것과 같이 銀行도 保險會社를 引受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消費者團體, 勞動組合, 保險業界는 銀行의 保險業에 대한 더이상의 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a. 預金者에 대한 위협 증가 : 銀行이 保險을 판매하게 되면 銀行業務와 保險業務를 동시에 영위하게 됨에 따라 위협이 증가하게 되어 預金者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批判者들은 1984년 첫 8개월 동안에 預金者를 보호하기 위해 聯邦 預金保險公社가 75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의 파산을 포함하여 최소한 49개의 銀行이 파산했으며 그것은 1939년 이래 최대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批判者들은 銀行業務와 保險, 특히 파산 가능성이 높은 損害保險을 결합하는 것은 預金者와 保險契約者에게 逆效果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b. 경제력 집중의 증가 : 상대적으로 소수인 巨大銀行이 銀行業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銀行業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批判者들에 의하면 銀行에게 保險商品의 판매와 契約締結權을 부여하는 것은 銀行의 경제력을 증가시켜 은행업계에서의 집중력도 증가할 것이며 大銀行은 또한 大保險會社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 獨立代理店의 생존 위협 : 獨立代理店은 銀行의 保險業界 進入이 허용되면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獨立代理店은 그들의 顧客을 銀行에 빼앗길 수도 있으며 재정적 타격에 대한 불안은 소규모 농촌 지역에 주재하는 獨立代理店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은 顧

客을 지방 市中銀行에 빼앗길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d. 債務者에 대한 강요 : 市中銀行이 債務者에게 保險商品의 구입을 강요할 수 있다. 銀行顧客이 貸出을 받을 때 信用健康生命保險, 抵當保險 (mortgage insurance), 家計綜合保險, 自動車保險등을 구입할 것을 강요받을 수 있다. 地方銀行이 貸出市場을 統制하기 때문에 地方保險市場도 통제할 것이다.

銀行의 保險業界 進出에 대한 주장은 더욱 강화

될 것 같고 동시에 保險者와 독립대리점에 의해 제기된 반대도 더욱 강화될 것 같다. 그러나 保險業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銀行은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銀行은 保險商品을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수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로비스트로 정치적으로도 잘 무장되어 있고 顧客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추세도 지속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銀行의 保險業界 進出에 대한 주장은 장래에 더욱 강력해질 것 같다.